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9. 2. 13.(수) 09:3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이호성 위원장
김석진 부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
허 욱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9년도 제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5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그리고 제6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9-07-026)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장봉진 방송정책 기획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장봉진 방송정책기획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입니다. 의결주문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신료 체납 가산금 인하 및 면제 절차 간소화 등으로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사항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상임위원 워크숍을 통해 수신료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드리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10월 31일 개정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보고드렸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체납 가산금 비율 인하입니다. 수신료 체납 시 가산금 비율 5%를 다른 부담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3%로 하향 조정하고, 수신료 납부 독촉장에 가산금 부과 근거를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감액제도 고지 의무화입니다. 수신료 감액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KBS 등이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면제절차 간소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중 수신료 면제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 없이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수신료 환급근거 신설입니다. 수상기 등록자뿐만 아니라, 수상기 미소지자에 대해서도 수신료가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환급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수상기 등록 면제 대상 등 면제사유의 중요성과 유사성을 고려해서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시행령 개정 이후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의결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방통위의 존재 이유는 방송의 시청자, 통신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편익, 권익을 증진시키는 것인데 오늘 이 안건은 큰 것은 아니지만 시청자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들 있으면 주시지요.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이번 안건은 수신료 체납 가산금 인하와 면제 절차 간소화 등 시청자 부담을 경감하는 수신료 제도 개선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에 동의합니다. KBS가 선납 감액제도 고지 의무화에 대해 실익이 적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신설이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안내를 의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KBS의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지 의무화는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사로서 당연한 책무입니다. 아울러 체납 가산금 비율도 5%에서 3%로 인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 이 역시 규제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KBS 측의 일부 재원 감소가 있더라도 국민 편익을 위해서는 원안대로 3%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광고 매출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동결된 수신료 인상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지만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반대가 심해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부여된 공적책무를 더욱 성실히 이행하고 중간광고 도입 때 논의하여 약속한 상위직급의 직원 축소나 조직 개편을 통한 보직자 수의 축소, 또 업무추진비와 같은 긴급한 비용 절감 등의 약속을 실천해서 경영 합리화를 위한 자구 노력이 선행될 때 수신료 인상에 대한 시청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원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기본적으로 방금 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KBS의 주 재원이 수신료입니다. 수신료 감액 제도가 있는 것은 당연히 KBS가 널리 고지해야 할 의무가 확실하게 있는 것입니다. 수신료를 내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신료를 전력요금에 병과해서 징구하고 있는데 이 감액 제도를 더 많이 홍보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수신료를 먼저 내면 그다음에 전력요금에서 빼주세요' 이렇게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 장봉진 방송정책기획과장

- 그 부분은 KBS와 이야기 중이고, 일단 감액을 신청하면 그것을 분리하는 방법들은 실무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것을 충분히 보완해야 이 선납제도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원안에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KBS가 지금 낸 의견을 보면 체납 가산금 비율을 5%에서 다른 체납금과 형평을 맞춰서 3%로 내리는 데 대해 수신료 납부 회피와 재정 부담이 가중될까 우려된다, 이런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선납 감액제도 안내 공지를 의무화하는 이런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실익이 적고 숙박업소 등 영리업자들이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에 수신료 재원이 감소될 것을 우려한다, 이렇게 해서 또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저는 관점이 틀렸다고 봅니다. 지금 KBS가 우리 국민들에게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를 걷을 때 이런 자세가 되면 안 됩니다. 재원이 감소되고 걱정을 한다면 그 걱정에 앞서서 왜 수신료를 내지 않고 회피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지 근본 원인부터 따져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전처럼 땅 짚고 헤엄치던 시절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채널·다매체 시대가 되어서 시청자들이 얼마든지 채널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처럼 수신료 내라면 고분고분 수신료를 내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시청자들의 선택 시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과연 시청자에게 공영방송으로서 어떻게 서비스를 할 것인가, 이런 봉사하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징벌을 가하고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KBS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 하고 있는지 자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허 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방만한 경영은 이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자구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왜 많은 시청자들이 KBS를 외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굳이 야당의 시청료 납부 거부운동을 제가 들먹거리지는 않겠지만 지난 11일 이번 주 서울대언론정보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공영방송들이 대단히 편향적인 내용의 방송들을 내보내고 있다는 발표내용을 우리가 보도로 접하고 있습니다. KBS, MBC 사장이 바뀐 이후에 현 정부의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대단히 편향적인 발언을 유도하고 있고, 또 사실 팩트(fact)에 기인한 보도·시사가 아니라 정치적 주장들을 여과 없이 내보내고 있다는 자료를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정권만 바라보고 정권과 코드를 맞추려고 하고 사장이 그렇게 방송을 끌고 간다면 어느 한편만을 위한 방송은 국민의 방송이 아닙니다. KBS가 내거는 기치가 '국민의 방송' 아닙니까? 전 국민을 위한 방송을 해야지, 어느 한 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소위 정권 편향적인, 정권 홍보방송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수신료를 회피하는 원인 중 하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의 전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사무처에서도 이런 제도를 개선하면서 KBS에 각성을 촉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논의라는 생각을 하고 공영방송으로서 전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공영방송 KBS가 공정한 방송을 해야 한다, 또 국민을 위한 방송을 해야 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상파 방송사들이 어려운 가운데 방만한 경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최근에 KBS에서 경영혁신방안들 그리고 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이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KBS의 대국민 약속이 성실하게 이행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석진 부위원장님께서 특정 신문에서 지상파 라디오방송, 그리고 일부 지상파의 토론 프로그램의 공정성 시비를 보도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는 지상파방송사들 그리고 진행자들이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보고서의 경우 지금 보도를 주도하고 있는 특정 언론에서 서울대언론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사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보도나 시사프로그램들의 공정성 논란과 더불어서 이러한 연구용역을 준 주체가 그것을 이슈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져 봐야 합니다. 즉, 애초에는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면서도 발주처가 어디인지도 나오지 않았었고 어떤 내용으로 연구했는지, 그리고 그 척도가 객관적인지도 전혀 검증이 안 된 상태입니다. 권위 있는 대학연구소에서 주문자의 뜻에 맞춰서 연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이러한 연구를 수주했고 연구의 목적, 내용, 거기에 사용된 방법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투명하게 공개됐어야지요. 왜 사후에 공개합니까?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통상 연구보고서는 정부기관이 아닌 이상 발주자가 의도를 가지고서 연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하나의 연구보고서를 가지고 라디오 진행자나 프로그램이 불공정하다, TV 토론 프로그램의 내용이 불공정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안건은 수신료 납부와 관련된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입니다만 이것 외에도 4기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KBS 수신료 제도와 관련해서는 수신료를 투명하게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앞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 논의와 공영방송 KBS의 보도의 공정성 문제가 연계되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냉정하게 봐서 이것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지상파방송사들이 어렵고, 특히 공영방송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선 공영방송사들이 재정의 부담 없이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장에 의존하는 광고재원이 아닌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KBS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당연히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또 KBS 보도의 공정성, 그리고 프로그램의 공공성들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30년 이상 동결되어 있는 수신료가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공영방송 KBS는 여러가지 정치적 어려움이나 국민적인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해서 수신료를 주재원으로 운영하는 원칙은 변함없이 가지고 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제가 진행과 발언 문제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안건이 주어졌을 때 그 안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우리가 KBS 논조의 문제라든지, 고저 조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오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인데 그런 것들은 별도의 기회에 또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조선일보에 나온 지상파방송사들의 보도내용에 대한 분석, 서울대에 의뢰해서 한 것 등에 관한 것도 별도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KBS 수신료 체납 가산금 인하 문제나 면제절차 간소화 이런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빌미로 그런 것까지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별도로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논의의 주제로 삼아서 당연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계 없는데 자꾸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적절하지 않고 논의가 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절제를 잘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방금 위원장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제가 발언기회를 얻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본 안건은 수신료 체납 가산금 문제 그리고 수신료 일부 면제하는 절차 간소화 등 공영방송 수신료 징수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것인데 이야기가 너무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본 안건을 처리하고 회의가 끝난 뒤에 기타 이야기 할 기회라든지, 아니면 공정방송과 관련된 안건들이 있을 때 다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보고안건 가>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콕진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콕진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및 금지행위에 비필수앱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음란정보 유통방지 및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손해배상 규정 등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2건이 작년 12월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세부 시행을 위해 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하위 고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신분쟁

조정제도 도입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분쟁조정 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 소위원회 구성, 그리고 회의 소집, 수당·여비 지급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 시 신청서 기재 사항, 그리고 첨부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구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분쟁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했을 시에는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절차를 개시하는 등 관련 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하였습니다. 분쟁당사자가 사망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당사자 지위 승계 조항을 마련하고, 조정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요청 그리고 출석 진술권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조정 절차 및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공개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이나 세부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세칙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裁定) 제도 관련 인용 조항 수정 사항입니다. 통신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되면서 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정정은 이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 정정에 관한 제1항의 각 호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40조의2 중 제3호에 대한 인용 문구도 법에서 규정하였던 문구로 수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시 이용자 통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 대상 사업자 및 고지 내용·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주요 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스타트업의 부담은 경감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기존 입법례와 ISMS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대상 사업자의 규정을 검토해서 의무대상 사업자는 3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기간통신 사업자, 그리고 IDC라든지 CDN 사업을 제공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그리고 부가통신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 1조원 이상 또는 전기통신서비스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하였습니다. 고지해야 할 내용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역무제공 중단 사실과 원인, 그리고 사업자의 대응조치 현황, 이용자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의 연락처를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고지방법은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게시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장애로 설비 이용이 곤란할 시에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률이나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기준 이상 역무가 중지되었을 시에 통지해야 할 방법과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고지해야 할 내용은 역무제공 재개일 혹은 장애원인 해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자, 그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손해배상 절차 및 방법을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고지방법은 전자우편, 전화, 문자 메시지, 우편 등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 30일 이상 게시하거나 2개 이상 전국 일간지에 1회 이상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필수업 삭제 부당 제한 행위 관련 금지행위 규정 개정 사항입니다. 현행 시행령상 규정이 법률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시행령상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법 제50조제1항제8호가 신설됨에 따라 [별표]에 있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존의 시행령상 비필수업 금지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 상한액 기준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하였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성폭력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위반해서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법에서 규정되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는 세부 기준으로 1차 위반 시 700만원, 2차 위반 시 1,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 제33조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 350만원, 2차 위반 70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손해배상 기준과 절차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사항의 중요도가 큰 점을 고려해서 1차 때부터 1차, 2차, 3차 각 1,000만원씩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입 규제 완화에 따른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별정통신사업과 기강통신사업이 통합됨에 따라 별정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정비하는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이제 재정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고시 문구에서도 “사업자와 이용자 간” 표현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입니다. 법 제50조제1항제8호에 비필수앱 삭제 관련 금지행위가 추가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상한액도 기존 규정되어 있는 법 제50조제1항제5호와 동일하게 매출액의 100분의 1,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8억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를 3월 말까지 거치고, 규제심사는 4월, 위원회 의결도 4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는 5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적어도 5가지 새로운 전기통신사업법의 내용들이 변화가 있게 되는데 이것들이 전부 이용자, 특히 사업자에게 상당히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사업자에게는 전에 없던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불편한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 업무가 이런 규제 업무이기 때문에 사업자를 옥죄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옥죄는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용자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넓히려는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 통신사업자의 사업에도 공정하게 수행되고 이용자들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잘 이해하도록 설득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우리가 규제를 통해 사업을 돕는다는, 사업을 위한 규제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들을 주시지요.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이번 안건은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과 전기통신역무 중단 때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규정들이 도입될 경우에 사업자들이 좀 더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가 있는데, 규정이 모호함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또 사업자들도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거나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고 분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은 국민이 통신서비스에 관련된 계약 체결이나 해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통신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에 소송을 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KT 아현지사 통신국 화재로 인해

피해 배상에 대한 통신사와 피해 상인들 간 배상 및 보상 범위를 두고 현재 가장 이견이 큼니다. 그리고 갈등이 전개되고 있는데 집단 소송 가능성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 배상액 산정 기준, 또 손해배상 절차 및 방법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 내용들 가운데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당히 적정하다고 보고 보고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규정 외에 실질적인 구성 준비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 **곽진희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시행령상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세부적인 절차에 관해서는 운영세칙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지금 운영세칙에 관한 부분도 작년도에 연구반을 만들어서 초안은 마련된 상태입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주요내용 중 하나가 진입규제 완화입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기간·별정통신사업자 구분을 없애고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하는 것인데 이에 관련된 후속조치는 과기정통부가 마련 중인 것이지요?

○ **곽진희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예.

○ **허 옥 상임위원**

- 세부 내용에 관련해서는….

○ **곽진희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대부분의 내용은 과기정통부에서 연구반을 구성해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소관 사항인 부분은 금지행위 규정 위반 시 업무정지를 하는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오늘 시행령 개정안에 일부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 대상 사업자는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또는 전기통신 서비스는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 부가통신사업자, 이런 것이 기준점이 된 근거가 있습니까? 1조원, 100억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 등, 그것을 확인해 주시지요.

○ **곽진희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제3항에 해당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기준을 전체 부가통신사업자를 다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규모가 큰 사업자 중심으로 뽑았고, 그 기준은 지금 현재 정보통신망법 입법례를 보시면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조항에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사업자' 이렇게 규정한 부분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에 보시면 ISMS라고 정보 보호관리인증체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 사업자의 대상이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그리고 3개월 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 사업자로 되어 있었고, 2가지 조항을 인용해서 마련하였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더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어제 국무회의에서 법제처에서 각 부처별로 또 부처의 관련된 법안에 과태료, 과징금이 들쭉날쭉이어서 이것을 걱정선으로 통합하겠다고 법제처 방침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그리고 제가 그것은 좋은데 그러나 규제업무가 많은 위원회 입장에서는 그것을 너무 경직되게 정하면 우리가 필요에 따라 경감, 가중 또는 법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이런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걱정선을 정하되 너무 경직되게 해서 융통성이 없는, 또 그렇다고 그것이 너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융통성과 걱정선이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통신장애 발생 시 손해배상 의무 부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여기 보면 과태료 부과 건도 있고, 음란정보 유통 방지에도 과태료 부과 건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법제처의 가이드라인이 언제쯤 나올지 모르겠고 지금 어느 선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필요하다면 알아보시고 걱정선에서 조정이 필요한 것은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아직 그것이 준비가 안 됐으면 일단 나가야겠지만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법제처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큰 방침이 저희 방통위에 전달되면 위원회에서 입법예고를 40일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각 부처 의견수렴을 해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입법예고기간 및 다음에 위원회 보고할 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나. 「통신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안)」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이어서 <보고안건 나> “「통신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곽진희

이용자정책총괄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곽진희**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보고사유입니다. 4차 산업혁명 등 ICT 환경변화에 따라 정책기조를 기존의 사업자 규제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국민들이 통신서비스를 안전하고 능동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이용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경과 보시면 '17년도 한 해 동안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작년도 5월에는 '이용자보호 종합계획 연구반'을 구성해서 초안을 마련하였고, 9월부터 11월까지 방통위 관련 부서, 연구기관(KISDI) 등 의견수렴을 거치고 워크숍도 개최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비전과 추진전략은 4기 방통위 정책목표인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 실현을 위해 '국민이 중심이 되는 통신 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하고 4대 목표, 8대 전략, 21개 과제를 선정·추진하고자 합니다. 4대 목표는 첫째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이용자 중심의 보호 체계 확립입니다. 둘째 이용자 역량 및 권리 강화, 셋째 상생협력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으로 이용자 편익 제고, 넷째 지능정보화시대 이용자 보호 체계 정립입니다. 다음은 8대 전략별로 21개 과제에 대해 정책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용자 피해 대응 및 구제 체계 확립 전략입니다.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시행령·고시 등 하위 법령을 '19년도에 정비하겠습니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이동통신 분야의 피해구제기준을 '18년도에 완료하였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가입·이용·해지 등 단계별 피해구제기준을 올해 마련하고 내년도에는 이용약관에 그 기준을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통신장애 대응과 관련해서도 통신장애 발생시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적용대상 사업자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면서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도 '20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자 보호체계 강화 및 불편사항 개선 전략입니다. 통신서비스별 맞춤형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용자 보호업무평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년도에는 가입자 수가 많고 영향력이 큰 부가통신사업자로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20년도에는 SNS 등 신유형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평가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서는 정보를 가리는 플로팅광고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상시점검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잠금화면에서 돌발 실행되는 신종 앱광고 규제 근거도 신설하고, 결합상품 변경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전환시스템도 '20년도에 구축하겠습니다. 불법스팸 대응과 관련하여 AI기반 머신러닝·딥러닝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스팸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신종 피싱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SNS 업체에 불법 광고·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등 新 차단기술도 도입하겠습니다. 다음 이용자의 역량 및 권리 강화 전략입니다. 통신서비스 이용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 단말기 출고가 등 비교공시 대상을 오픈마켓이나 중저가 단말기를 3종에서 5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무선 데이터 소모량 실태점검 대상도 4G, IoT 서비스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자 역량 제고를 위해 AI·IoT 등 신기술에 대한 정보비대칭 해소 등을 위한 콘텐츠도 개발·보급하고,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인터넷 역기능 대응 강화 및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 전략입니다. 불법유해정보 유통차단을 위해 웹하드·필터링업체 간 주식·지분 소유를 제한, 그리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회 접속으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신규 접속차단시스템을 도입하고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청소년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사이버 안심존 앱' 그리고 '스마트안심드림 앱' 보급도 확대하겠습니다.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를 위해 언론, 학계,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운영하고 자율 규제 방안을 마련해서 콘텐츠 교육 실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인터넷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생애주기별 교육을 추진하고, 인터넷 윤리체험관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이용자 중심의 시장 규제체계 개선 전략입니다.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통점의 불·편법 영업 점검을 강화하고, 과도한 단말기 수리비 인하를 위해 국내 A/S 운영실태도 점검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단말기유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리공시제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신유형의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OTT, 전자상거래 등 부가통신시장의 이용자이익 침해행위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상생환경 조성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 전략입니다.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해 통신사 그리고 알뜰폰 사업자, 통신사와 SO간 협약서 체결과 상품판매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 규제근거도 명확히 규정하겠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시장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차별이라든지 부당한 등록·삭제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기간·부가통신사업자 간 불공정 행위,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금지행위 규정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해 글로벌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공조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망 이용대가 계약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능정보화시대 이용자 보호 체계 정립 전략입니다. 지능정보화시대 이용자 보호 규범 정립을 위해 지능정보화시대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10대 원칙을 발표하고, 지능정보서비스 자율규제를 위한 '민관협의체'도 운영하겠습니다. AI 이용자 보호 법제도 정비를 위해 AI의 공공성·책임성·투명성 원칙을 반영한 개발·연구가이드라인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알고리즘 개발과 관련하여 법제 개선안 마련도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이용자 보호 법제 정비 및 거버넌스 개선사항입니다. 3년 단위로 앞으로 이용자보호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개별 법률에서 규정된 이용자 관련 규정도 정비해 나겠습니다. 또한 불법유해정보 대응, 신속한 통신분쟁 해결, 그리고 공정경쟁 질서 확립 및 관리·감독, 조사 강화 등을 위해 방통위 조직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내 '불법유해정보대응과'를 신설하고, 중기적으로는 방송통신시장조사국, 또는 조사심의관을 신설한다든지 심판행정담당관과 분쟁조정사무국 신설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조사절차를 개선하고, 해외기관과 업무협력체계도 새롭게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 및 이행방안입니다. 이용자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이용자 피해 대응 및 규제체계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능동적인 참여와 권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규범을 정립하여 이용자를 보호의 대상에서 앞으로는 참여·소통·창의적인 주체로 전환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오늘 종합계획에 따라 설정된 21개 추진과제별 구체적 목표와 추진 일정을 기준으로 매년 실적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인력·예산 등 정책수단을 강구하여 차년도 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앞에 안건 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리, 이익, 편익을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에 관한 건은 시의적절하고 어떻게 보면 만시지탄이 있을 수 있지만 아주 체

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잘 정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보텔 부분이나 조금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방송통신서비스 환경 변화를 반영한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제시한 사무처 노고를 적극적으로 치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종합계획이 시기적으로 조금 앞당겨서 작년 상반기 끝나왔으면 하는 개인적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이라도 많이 늦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제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과제 중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종합계획이 매우 훌륭하다는 것을 전제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보고한 바와 같이 앞으로 이용자 보호 정책의 종합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은 법정계획으로 수립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IoT나 AI와 같은 신기술 등장과 방통융합의 고도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용자 보호 이슈들에 대한 발굴, 그리고 새로운 관점의 이용자 보호 정책 방향은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또한 구체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에서도 제기됐지만 AI 알고리즘의 공정성 문제나 지능정보사회의 불공정 행위, 그리고 이용자 보호, 또한 데이터 주권 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 또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면서도 컨센서스를 모아 가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종합계획은 과제별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종합계획에 의해 3년 주기로 장기적인 이용자 보호 비전을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정책을 추진한 뒤에는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부서 책임자 그리고 감독자의 성과평가에도 연관되는 방식으로 종합계획의 추진력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계획,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에 따라서 실효성 있게 여러 가지 정책이 체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잘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부가통신시장의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모니터링 강화, 통신사와 알뜰폰 간 그리고 통신사와 SO 간 협약서 체결과 상품판매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 강화, 인터넷 플랫폼시장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이런 항목들이 쭉 있는데 모니터링 감시 이런 것은 당연히 인력이 소요되는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계획은 정말 좋은데 방통위 인력 가지고 이 계획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겠는지 의문 내지는 걱정이 되는데, 실무진 의견은 어떻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용자정책국은 6개 과 2개 팀 5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통신시장, 그리고 새롭게 부각되는 인터넷 플랫폼 시장, 향후에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나 조직이 보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도 장기적으로 담은 것은 전문적인 조사를 담당하는 시장조사국, 시장감시국 형태의 전문 조사국이 있고, 별도로 이용자 보호정책 법제도를 하는 국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이것은 방통위 제4기에서

적극적으로 조직이 확대·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고 나서 지금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정말 실무에 적용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충분한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다 이행하는데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바로 인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진의 의견을 물어봤지만 한쪽으로는 위원장님 이하 부위원장님, 또 다른 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실무진에게 미안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같이 노력해서 이 문제까지 해결해 가면서 이 종합계획이 정말 훌륭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저는 사무처에서 그동안 많이 수고를 해서 이렇게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된 데 대해 애썼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진즉부터 이런 전체적인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체계적인 종합계획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행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인데 통신 분야는 발전속도가 정말 눈부시게 빠릅니다. 특히 AI나 또 신유형의 여러 가지 통신서비스, 이것이 정책이 미처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책당국의 이용자 보호 정책 종합대책은 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개정해 나가야 합니다. 이행 추진일정을 보니까 올해를 포함해서 3년간 추진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약 3년 정도 주기로 종합계획을 작성한다, 그런 복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 박진희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예.

○ 김석진 부위원장

- 제가 볼 때 3년도 깁니다. 매년 이것을 개정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통신 분야의 진화 속도를 우리가 따라잡지 못하면 정책은 늘 뒷북만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살펴봐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을 실천해 나가려면 모니터링 하나부터 시작해서 인력과 예산과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뒷받침해 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따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이행해 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해 총체적인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보고, 뒤늦게 이런 계획이 나온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무처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으로 통신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준비해서 발표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처에서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이용자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통신 이용자 보호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 우리 위원회를 통신 규제기관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은 이용자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한국소비자원에서 통신 불편 민원을 접수하고 통계를 내는데 결국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 위원회에서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잘 알려져야 많은 이용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보호받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통신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적절히 일정 기간 정리해서 그것을 발표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계획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잘 집행하고 중간중간 그러한 성과들에 대해 정리해서 국민들과 언론에 제대로 알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수고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종합계획(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해야 하는 것, 또 실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는 문제를 잘 지적하셨는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기는 사후규제로 되어 있는데 사후규제라는 것이 사전규제가 분리되어서 이것만 존재해서는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가령 통신 피해가 발생해서 우리가 피해 문제만 다루게 되어 있는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사전규제 차원에서 제대로 감독, 가령 지난번 KT 아현지사 통신국 같은 데 대한 사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희가 사후규제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려면 규제업무가 사전·사후로 나뉘어서 별도의 기관에서 하면 안 되고 어느 한 기관에서 규제업무는 종합적으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 이런 문제를 보면서 다시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가령 통신 이용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통신비를 낮추는 문제인데 저희가 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것은 통신사와 제조사들이 지급하는 비용을 공개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은 극히 미세한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주파수를 적절히 활용해서, 또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통신비를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그것이 따로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처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정책, 이용자정책도 제대로 수행되기 않는다, 저희들은 매우 미세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전규제, 사후규제가 일원화되는 것이 맞다, 어느 한 기구에서 말하는 이야기를 이런 기회를 통해 한번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우리가 현재로서는 이것만 맡고 있도록 되어 있지만 어떤 기회가 되면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제기해서 통신의 규제업무는 어느 한 곳에서 다 하는 것이 마땅하다, 방송규제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료방송, 지상파방송 이렇게 나누는 것도 방송의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되고, 오늘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그것을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가 아닌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어떤 기회에 그런 것들이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마지막으로 <보고안건 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지원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책을 마련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범위와 기준, 개인정보보호 자율 규제 지원 등 시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 박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보고드린 내용의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의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의 세부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1월까지 보험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 즉 보험사, 손해보험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학계 전문가가 참여해서 의견수렴을 위해 연구반을 총 8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및 자율규제 관련해서 총 4회의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보호의 촉진 및 지원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본방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및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첫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및 그 소속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개인정보보호 활동 관련 자료제출 또는 의견수렴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방통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시하였고, 셋째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등의 개인정보보호 활동계획의 이행 결과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활동계획의 이행결과 평가 및 그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부여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조문은 아래의 박스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 방법입니다. 기본방향은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동의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고려사항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현재 활용되고 있는 휴대전화·아이핀 등 본인확인, 부모의 로그인 계정, 신용카드 유효성 확인 등의 방법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인터넷사이트, 서면, 전자우편, 전화, 그밖에 유사한 방법으로 동의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 내용입니다. 기존 동의획득방법과 유사하게 규정하여 서면, 전화, 전자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동의를 받는 경우에 동의여부가 표시되도록 하는 한편, 문자와 앱push 알림 등 휴대전화 메시지와 신용카드 등을 통해 동의하였는지를 다시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과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문 내용은 아래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범위 및 기준입니다. 먼저 보험(공제) 가입 등 대상사업자의 범위입니다. 기본방향은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한 영세사업자들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의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이용자 피해구제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입대상은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일일 평균이용자가 1,000명 미만인 경우에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지정 의무',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시 최저가입금액입니다. 기본방향은 사업자의 '이용자수' 그리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고, '형평성' 및 '정책 수용성'을 고려하여 최저가입금액을 설정하였습니다. 아래 <표>의 유사 입법례를 보시면 최저보험가입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최저가입금액은 이용자수와 매출액을 각각 3개의 구간으로 분류하고, 이들 분류 기준을 조합하여 최저가입금액은 0.5억원부터 10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용자수 구간은 1,000명 이상부터 10만명 미만, 10만명 이상부터 100만명 미만, 그다음에 100만명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매출액 구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통신업종의 대중소 기업 구분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50억원 이하 소기업, 50억원 초과부터 800억원 이하 중기업, 그리고 800억원 초과인 중견·대기업 분류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용자 수와 매출액 규모에 따른 세부적인 손해배상책임보험 최저가입금액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비금 적립 시 기준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시의 최저가입금액에 준하는 금액을 보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조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금액입니다.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배상책임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과태료 상한금액을 2,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상 유사 입법례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의 기준을 참고해서 위반횟수와 무관하게 2,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위원회 의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6월에 법 시행과 동시에 시행령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몇 가지 개정하는 내용인데 이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정보통신 서비스업체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 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제대로 손해배상을 못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것이 또 역시 영세해서 이것도 다 가입하도록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을 주시지요.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보고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후에 개인정보보호 손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범위와 기준을 놓고 사업자들이 이견을 제시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한 영세사업자들도 보험가입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목적인데, 자동차가 굉장히 중요한 이동수단이고, 또 유동성이 높지만 만약에 있을 사고에 대비해서 모든 자동차 운전자들이 책임보험에 가입시키도록 의무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보자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사고의 책임보험을 예외시킬 수 없는 것처럼 스타트업 기업이 많은 ICT 사업에 영세사업자가 많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는 창업의 독려와 기술 그리고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려는 것이지, 규제 완화가 곧바로 이용자 피해에 대해 대책이 없는 상황을 발생시켜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사고 발생 시 처벌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따라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사업자들에게 이러한 취지와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사업자 의견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가지 사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리벤지 포르노물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 그리고 불법음란물, 불법도박, 저작권 위반 콘텐츠에 대해 이것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보안접속 HTTPS 방식으로 접속하는 것, 그리고 우회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특히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하기 위해 차단 기술을 고도화하였습니다. 2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통신심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였고, 여기에서 불법 해외 사이트로 차단 결정된 앞서 말씀드린 불법도박, 음란물, 그다음에

저작권 위반, 국보법 위반 사이트 895건에 대해 접속을 차단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존 URL 기반, 도메인 기반 차단의 경우 우회방법으로 접속하는 경우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보안접속 HTTPS 방식의 해외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는 이러한 불법영상물을 유통시키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의 한계로 인해 법 집행력 확보에 문제가 있었고, 또 이용자 피해 구제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언론, 시민사회단체가 실효성 있는 차단방법을 강구하도록 방통위원회에 그리고 방심위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7개 ISP 사업자들과 작년부터 협의해서 SNI 차단 방식을 도입하기로 협의하였고, 어제부터 이 기능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제부터 적용하고 있는 SNI 차단 방식은 첫 번째 법에 명백히 불법정보로 규정되어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만 차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법이 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투명하게 거쳐 차단 대상을 결정하고 그것에 대해 차단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차단 결정에 대한 실행은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실행은 민간 ISP가 하기 때문에 지금 일부에서 문제제기하는 정부에 의한 감청, 이용자 사생활 침해들은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것이 시행되고 나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하루 만에 1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에 대해 폐지해달라는 'HTTPS 차단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학부모단체, 여성단체, 특히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은 정부의 강력한 불법음란물 차단 방침에 대해 환영하는 청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도 청원내용을 다 살펴보고 언론보도도 봤지만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과도하게 염려하고 있다,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용자 개인에 대한 감청은 현재 불법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의해 허용되는 것들을 제외한다면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는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SNI 차단방식에 대한 논의는 작년부터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에 2017년 디지털 성범죄 근절 종합대책 때부터 이 방안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특히 작년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것을 논의해 왔지 않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 등이 유통될 때는 국내 인터넷사업자들은 검경 수사 등을 통해 삭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시정요구 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문제가 됐던 텀블러 불법 포르노물 등 해외 인터넷사업자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 시정요구에 전혀 수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정부에서 600여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DNS 차단 결정까지도 했었던 사안입니다. 해당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경우에는 정말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 단위로 차단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SNI 필드 차단 방식으로 고도화하였고, 이것은 방통위, 방심위, 인터넷사업자들과 협의해서 지난 6월부터 거의 1년여간 해 왔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청원의 요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불법영상물, 불법도박 사이트, 저작권 위반 사이트에 대해

차단하는데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 향후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그 내용에 대해 차단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또 다른 언론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재해서 보도했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만으로 당장 개인정보가 당국에 의해 검열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방식이 데이터 내용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통신하기 위한 설정정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패킷 감청과 연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청원에 올라온 내용 중 제가 검증은 하지 않았지만 HTTPS 방식으로 접속을 차단했는데 일부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지장을 받았다는 청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기술적으로 보면 창과 방패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방패가 튼튼하면 창이 예리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회방법이 있다는 것인데, 어찌됐든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고, 당장 청와대 국민청원이 10만명이 넘었습니다. 곧 20만명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국민들의 여론을 잘 살펴서 혹시 잘못된 사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오해를 바로 잡고 이해를 구할 것은 이해를 구하고, 또 정부가 미처 제도를 도입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합리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HTTPS 보안접속 차단이 패킷 감청이나 인터넷 검열로 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HTTP 형태로 운영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차단 형태다. 정부가 차단하는데 실제로 검열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전혀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조에 따라 적법절차를 거쳐 인터넷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하고 인터넷사업자가 그 결과를 국제 관문국에서 차단하는 형태로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세미나도 개최해서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심위에서 차단한 895건 중에서 776건 86.6%가 도박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합법적인 성인 영상물 차단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성인 영화는 차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죄, 또는 대법원 판례에서 아주 명백한 노골적인 음란물, 아동포르노물에 해당되는 사이트에 대해서 차단하는 것이지, 성인물에 대해서 차단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서 나타나는 일부 지적사항이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작년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이 나올 때 그 전에 텀블러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었고, 특히 아동에 관련된 음란물까지도 유포가 되어서 문제일 때 URL를 막는 방식까지도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URL를 막으면 보안 프로토콜이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새로운 URL을 개설해서 제공하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HTTPS의 경우에는 불법도박이나 음란물 외에 불법 무기거래까지도 가능하다고 국회에서 지적되었고 도대체 정부가 무엇을 하느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극적인 대책으로 제시한 것인데 이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나 아니면 통신감청까지 주장되는 것은 상당한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 2가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서버 네임 인디케이션(Server Name Indication)이기 때문에 SNI 필드로 만약에 이것을 차단한다는 것은 패킷을 열어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접속경로를 막는다는 정도에 불과한데 이것이 통신감청이 될 수 있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은 보안접속 통신방식에서 처음으로 해외 불법 사이트에 접속할 때 암호화되지 않은 SNI 필드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딱 한번 하는 내용인데 이 서버 네임을 확인하고 이것을 통신사업자가 차단대상 서버 이름을 확인해서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텀블러라면 해당 사이트 서버에 접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지, 데이터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그것과 연관되어서 나타난 현상 같은데 만약에 그 내용을 안다면 그리고 관련된 정보를 리턴해서 그 접속자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정보에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불법으로 규제하는 사이트입니다'라고 알려줄 수 있는데 그런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접속을 막아버리면 이른바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압전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맞습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일반 이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이것이 무슨 현상인가?' 블랙아웃이 나타난 원리나 내용을 잘 이해 못 하면 이것이 오히려 감청이나 아니면 종전에 나타났던 일종의 패킷을 열어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접근할 때 2가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불법도박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불법음란물도 유통됐었던 내용들입니다. 핵심은 이런 불법정보의 유통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로 인한 피해자들도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정보 유통사업자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면서 마치 그 뒤에 숨어버리는 문제점들은 철저히 걸러 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통신자유를 주장하는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이나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심각하고 그럼에도 정부가 최소규제원칙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관해 우리가 어떻게 진전시키고 있는지, 기술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시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책에 관련해서 진보적인 시민단체들까지도 정책고객으로 적극 참여시켜서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고, 여기에 필요하면 언론에서 제기하는 몇 가지 문제점도 쟁점으로 명확하게 정리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만일 사이트에 불법적인 것과 합법적인 것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가 가장 최소 단위의 규제는 해당 인터넷 화면 URL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인터넷 화면을 차단하는 것이 URL 차단방식입니다. 그다음에 DNS 차단방식은 해당 사이트의 도메인, 해당 사이트 전체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SNI 필드 차단 방식은 해당 사이트 전체가 아니고 해당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운영할 때 불법정보에 해당되는 서비스만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서비스 단위, 서버 단위 차단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고도화를 하면서 고민했던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차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보안접속이라 하더라도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것은 안 된다는 2가지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작년에 방심위에서 23만여건의 불법정보를 심의해서 삭제 또는 차단 결정을 했는데 그중에서 18만여건 이상이 해외 사이트입니다. 그 해외 사이트의 70%가 HTTPS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방심위 심의 결정에 상당 부분 차단되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던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에 새로운 차단방식을 도입하면서 명백한 불법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사생활을 침해하는 영상물, 그다음에 도박, 웹툰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영상물, 아주 명백한 불법정보에 한해서 심의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라 차단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광영환 법률자문관님,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법률적으로 검토할 때 사전검열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소지는 없습니까? 한번 들여다보셨습니까?

○ 광영환 법률자문관

- 아직 검토를 마치지 않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서버 네임 인디케이션(Server Name Indication)이 불법적인 내용을 담당하는 서버를 차단시킨다고 하더라도 혹시 그중에 합법적인 내용이 들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 차단이 되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불법적인 것이라면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거나 더구나 불법적인 것을 차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이것이 사전 검열 표현의 자유 침해에는 해당사항이 없겠지요. 그런 점을 잘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용자들에게는 잘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리고 이것이 어느 곳에서 담당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차단조치를 하는 곳이 우리입니까?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방심위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 내용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독립기관인 방심위 결정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차단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정보통신망법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 절차를 잘 설명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것 검열이나 하고 행복추구권을 방해하는 그런 기구 같이 오인되지 않도록 잘 해명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장님과 허 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3가지 정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SNI 필드 차단 방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설명하고, 그리고 차단 대상을 선정하고 실행되는 근거들이 법에 의해 엄격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결정되고 집행된다, 이것을 국민들께 분명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차단되어 있는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다른 경고가 없이 화면이 블랙아웃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기술적으로 블랙아웃 되더라도 이것에 대해 경고메시지를 보내는 기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차단했을 때는 워닝(Warning) 화면이 떴지 않습니까? 워닝(Warning) 화면이 뜨지 않고 블랙아웃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 대단히 불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방법이 있는지 사업자들과 기술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러다 보니까 이용자 개인 입장에서는 내가 불법도박이나 불법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했던 정보를 혹시 사업자가 가지고 있고, 또 사업자는 그것을 정부와 혹시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개인정보의 이용 내지 악용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또 그렇게 되면 불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갑자기 블랙아웃이 되면 무슨 바이러스에 걸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경고화면이 반드시 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기 회의는 2월 20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9년 제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04분 폐회 】